#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96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 박희승·이성윤·서영교

어기구 · 김문수 · 위성곤

박용갑 · 강유정 · 한정애

김한규 · 박상혁 · 김남희

유준병 · 소병훈 · 황명선

최기상 • 전진숙 • 신영대

이재정 · 정성호 · 한민수

민병덕 의원(2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 시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산후 돌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산모의 수요가 높으나,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사무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적극적 확대에 어려움 이 있음.

실제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

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산후조리 여건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3년마다 실시되는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78.1%)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

법률 제 호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17제1항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공급실태 등"을 "공급실태, 출생아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제2항) 중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를 "모자동실 설치·운영"으로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회 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산모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10.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모 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15조의17제1항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이 경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 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 조리원(이하 이 조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개 정 아

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조리원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

-----설치 · 운영하여 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 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의18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에서 이용요금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 다.
-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 른 5 · 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 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 전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산모
-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을 출산한 산모
- 10.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산모
- <u>③</u> -----
- ②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

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 9. (생략) <신 설>

런, 모자동실 설치 • 운영, 이용 ---모자동실 설치 • 운영-----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제21조(경비의 보조) ①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5조의17제1항 따른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 운영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 용요금 감면으로 인해 소요되 는 비용. 이 경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 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경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